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11-73
----------	-------

발의년월일 : 2011. 9. 30.

발 의 자 : 차재홍, 김효철, 마동환,  
송병길, 서종수, 유동균,  
오진아, 윤동현, 정형기,  
조영덕, 한일용(11명)

## 1. 제정이유

동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나. 안 제5조에서는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다. 안 제7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 안 제11조에서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안 제12조부터 제 21조까지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 업무 소관국장 및 기타 필요한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마포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바.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3. 제정근거

가. 관광기본법(법률 제8741호, 2007.12.21) 제6조

나. 관광진흥법(법률 제10556호, 2011.4.5) 제47조의 2

### 4. 예산조치 : 필요(추계적 산정, 마포구청장 협의완료)

가. 위원회 수당 지급 : 3,920,000원(14명×4회×70,000원)

###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다. 예산관련 자치단체장 의견 : 따로붙임

## 「관계 법령」

### 1. 관광기본법[시행 2007.12.21] [법률 제8741호, 2007.12.21, 일부개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관광진흥법[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47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포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3장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유희시설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안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배치)** 안내소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장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기타 필요한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불구하고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한 위원회로 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2조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제15조의 임기를 적용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